

서울특별시의회  
제314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2. 9.

서울특별시의회  
아이수루 의원(더불어민주당, 비례)

□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아이수루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현재 관광취약계층은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41조의3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등의 적용대상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.

□ 서울시는 관광취약계층 중 신체적 제약으로 여행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자, 장애인, 임산부,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약자의 물리적 환경개선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등의 ‘무장애 관광’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.

□ 따라서 시민 관광복지를 확대하는 ‘무장애 관광’을 환경적, 정보적, 서비스 측면에서 양질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합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